

法律 第 4,916號

産業安全保健法 中 改正法律

(1995. 1. 5 공포)

産業安全保健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第1項 中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基準을 준수하여야 하고,”를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事業場의 安全·保健에 관한 情報을 勤勞者에게 제공하고,”로 한다.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보고의 義務) ①事業主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 第2項 第1號 내지 第5號를 각각 第2號 내지 第6號로 하고, 同項에 第1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第1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議決한 사항

第15條 第5項 中 “지정의 取消,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를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로 한

다.

第19條 第1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勞使協議會法에 의한 勞使協議會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勞使協議會가 설치되어 있는 事業場에 있어서는 당해 勞使協議會를 이 法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로 본다.

第19條 第2項을 第5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내지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産業安全保健委員會는 당해 事業場의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場의 安全·保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團體協約·就業規則·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管理規定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事業主 및 勤勞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産業保健醫는 産

부록 1-1

業安全保健委員會에 출석하여 安全·保健에 관한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20條의 題目 중 “작성·申告 등”을 “작성 등”으로 하고, 同條 第1項 本文 중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를 “작성하여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勤勞者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第20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3項 중 “작성하여 申告하여야”를 “작성하여야”로 한다.

②第1項의 安全保健管理規程은 당해 事業場에 적용되는 團體協約 및 就業規則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安全保健管理規程 중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第21條 第2項을 削除한다.

第26條 第3項 중 “第2項”을 “第3項”으로 하여 이를 第4項으로 하고, 同條 第2項을 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勤勞者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作業을 중지하고 待避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直上級者에게 보고하고, 直上級者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第27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勞動部長官은 第23條·第24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作業環境의 표준을 정하여 事業主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第29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3項을 第4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그의 受給人 또는 受給人的 勤勞者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命을 위반한 경우로서 産業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③受給人 및 受給人的 勤勞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第30條의 題目 “安全管理費의 計上 및 使用”을 “標準安全管理費의 計上 등”으로 한다.

第30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3項 내지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安全管理費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工事의 진척별 사용기준
2. 建設工事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標準安全管理費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者 또는 建設業을 행하는 者는 당해 標準安全管理費를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標準安全管理費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 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建設工事を 행하는 事業主가 標準安全管理費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專門機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 지정·지정의 取消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1條 第5項 중 “지정의 取消 기타 필요한 사항

부 록 1-1

은 勞動部令으로”를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로 한다.

第33條 第2項 중 “他人에게 貸與하는 者”를 “他人에게 貸與하거나 貸與받는 者”로 하고, 同條 第3項 중 “性能檢査를”을 “性能檢定을”로 하며, 同條 第4項 중 “性能檢査에”를 “性能檢定에”로 한다.

第36條 第3項 중 “지정의 取消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를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로 한다.

第38條 第6項 중 “勞動部令”을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40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化學物質 외의 化學物質(이하 “新規化學物質”이라 한다)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事業主는 化學物質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障害을 豫防하기 위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대한 有害性調査結果報告書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消費者의 生活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新規化學物質을 輸入하는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2. 新規化學物質의 輸入量이 少量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第40條 第2項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調査를 실시한 事業主는 그 결과에 따라”를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調査結果에 따라”로 하며, 同條 第3項 중 “名稱”을 “명칭·有害性·조치사항 등”으로 하고, 同條 第4項 중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의 有害性調査結果報告書가 제출된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에 관

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의 意見을 듣고”를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化學物質의 有害性調査結果報告書에 따라”로 한다.

第4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1條(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비치 등) ①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劑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製造·輸入·사용·運搬 또는 貯藏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物質安全保健資料”라 한다)를 작성하여 取扱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化學物質의 명칭
2. 安全·保健상의 取扱注意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위하여 警告標識를 부착하고, 勤勞者에 대한 教育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讓渡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함께 讓渡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에게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物質安全保健資料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作業工程別로 管理要領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록 1-1

⑥ 労働部長官은 勤勞者の 安全·保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物質安全保健資料와 관련된 자료를 勤勞者 및 事業主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제출, 警告標識 기타 필요한 사항은 労働部令으로 정한다.

第42條 第5項 중 “지정의 取消 기타 필요한 사항은 労働部令으로”를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로 하여 이를 第6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 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直接 또는 作業環境測定을 실시한 機關으로 하여금 作業環境測定結果에 대한 說明會를 개최하여야 한다.

第43條 第4項을 削除하고, 同條 第5項을 第4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 第6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事業主는 第1項 및 第4項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結果 勤勞者の 健康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勤勞時間의 短縮 및 作業環境測定の 실시, 施設·設備의 設置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⑥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健康診斷의 回數·檢査項目·檢診費用, 健康診斷醫療機關의 指定要件·指定節次·지정의 取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労働部令으로 정한다.

第47條 第1項 중 “就業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당해 作業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同條 第3項 중 “教育機關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労働部令으로”를 “教育機關의 지정·지정의 取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労働部令으로”로 한다.

第48條 第1項 중 “그 工事着工 60日 前に 労働部長官에게”를 “労働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労働部長官에게”로 하고 同條 第3項 中 그 工事着工 30日 전에 労働部長官에게”를 “労働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労働部長官에게”로 한다.

第49條 第3項 중 “診斷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労働部令으로”를 “診斷·지정의 取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로 한다.

第49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9條의 2(工程安全報告書의 제출 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害·危險設備를 보유한 事業場의 事業主는 당해 設備로부터의 危險物質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事業場내의 勤勞者에게 즉시 被害를 주거나 事業場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事故(이하 이 條에서 “重大産業事故”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하여 労働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할 때에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労働部長官은 工程安全報告書를 審査한 후 勤勞者の 安全과 保健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工程安全報告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제출한 事業主는 労働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労働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事業主 및 勤勞者는 工程安全報告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록 1-1

第51條 第1項 중 “事業場”을 “事業場 또는 第52條의 4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의 事務所”로 한다.

第51條 第7項 중 “第3項”을 “第4項”으로 하여 이를 第8項으로 하고, 同條 第6項 중 “勞動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을 “勞動部長官은 産業災害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第6項의 規定”으로 하여 이를 第7項으로 하며, 同條 第5項 중 “第3項”을 “第4項”으로 하여 이를 第6項으로 하고, 同條 第3項 중 “第2項”을 “第3項”으로 하여 이를 第4項으로 하고, 同條 第2項을 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勞動部長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勤勞者 또는 第52條의 4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第6章의 2(第52條의 2 내지 第52條의 8)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章의 2 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

第52條의 2(指導士의 職務) ①産業安全指導士는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工程상의 安全에 관한 評價·指導
2. 有害·위험의 防止對策에 관한 評價·指導
3. 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련된 計劃書 및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産業安全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産業衛生指導士는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作業環境의 評價 및 개선 指導

2. 作業環境改善과 관련된 計劃書 및 보고서의 작성

3. 産業衛生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産業衛生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이하 “指導士”라 한다)의 業務領域別 종류·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2條의 3(指導士의 資格 및 試驗) ①指導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이 시행하는 指導士試驗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의 실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導士試驗의 실시를 대행하는 專門機關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⑤指導士 試驗의 科目·다른 資格 보유자에 대한 試驗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2條의 4(指導士의 登錄) ①指導士가 그 職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教育을 이수하고, 勞動부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는 그 職務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부 록 1-1

3. 이 법에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다른 法律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執行猶豫 기간중에 있는 者

6.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④ 勞動部長官은 指導士가 第3項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고, 第52條의 6의 規定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에 관하여는 商法 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第52條의 5(指導士에 대한 指導 등) 勞動部長官은 公團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指導士에 대한 指導·연락 및 情報의 공동 이용體制의 구축·유지

2. 指導士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事業主의 불만·苦衷의 처리 및 被害에 관한 紛爭의 調停

3. 기타 指導士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第52條의 6(秘密維持) 指導士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2條의 7(損害賠償의 責任) ① 指導士는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第52條의 4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證保險에 加入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52條의 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第52條의 4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가 아닌 者는 産業安全指導士·産業衛生指導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3條 중 “第40條의 規定에 有害性調査結果에 대하여 의견을 開陳하는 者”를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者”로, “安全·保健診斷을 행하는 者”를 “安全·保健診斷을 행하는 者 및 第49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工程安全報告書를 검토하는 者”로 한다.

第63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3條의 2(聽聞 및 처분기준) ① 勞動部長官은 第15條·第16條·第30條·第31條·第36條·第38條·第42條·第43條·第47條·第49條 또는 第52條의 4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代行機關·保健管理代行機關·指定教育機關·指定檢査機關, 指定測定機關 등의 지정, 物質製造 등의 許可 또는 指導士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업무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聽聞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正當한 사유없이 聽聞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聽聞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 또는 정지의 기준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64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指導士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書類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록 1-1

第66條 第1項 第3號 중 “性能檢査를”을 “性能檢定을”로 하고, 同項 第9號를 第13號로 하고, 同項에 第9號 내지 第12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9. 第49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工程安全報告書의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
10. 第52條의 3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에 응시하고자 하는 者
11. 第52條의 4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教育을 받고자 하는 者
12. 第52條의 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第67條 第2號 중 “第51條 第5項·第6項”을 “第51條 第6項·第7項”으로 한다.

第68條 第1號 중 “第43條 第1項”을 “第43條 第1項, 第49條의 2 第1項·第2項, 第52條의 6”으로 하고, 同條 第3號 중 “또는 第43條 第5項”을 “第43條 第4項 또는 第49條의 2 第3項”으로 한다.

第69條 第1號 중 “第11條 第1項, 第12條, 第13條 第1項, 第18條 第1項”을 “第12條, 第13條 第1項, 第18條 第1項, 第19條 第3項”으로, “第41條, 第42條 第3項, 第43條 第2項·第4項”을 “第42條 第3項, 第43條 第5項”으로, “또는 第64條”를 “第49條의 2 第4項·第5項 또는 第64條 第1項·第2項”으로 하고, 同條 第2號를 삭제하며, 同調 第6號 중 “第10條”를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第51條 第2項”으로 한다.

第70條 第1號 중 “第20條 第1項, 第21條 第1項, 第25條, 第29條 第1項 내지 第3項, 第44條 第2項”을 “第21條, 第29條 第1項·第3項·第4項, 第42條 第5項, 第44條 第2項”으로 하고, 同條 第2號 중 “第51條 第7項”을 “第51條 第8項”으로 한다.

第72條 第1項 및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 第1項·第20條 第1項 또는 第41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요지, 安全保健管理規程 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者
2.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0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安全管理費를 計上하지 아니한 者 또는 同條 第3項·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安全管理費를 사용한 者
4. 第40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害性調查結果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5. 第41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警告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教育을 실시하지 아니한 者 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讓渡·제공하지 아니한 者
6. 第41條 第4項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第25條·第43條 第2項 또는 第52條의 8의 規定에 위반한 者와 第5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 第5項 및 第42條 第5項의 規定은 1995年 7月 1일부터, 第49條의 2의 規定은 1996年 1月 1일부터, 第41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第52條의 3의 規定은 1996年 7月 1일부터, 第52條의 2 및 第52條의 4 내지 第52條의 8의 規定은 199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부 록 1-1

第2條(安全管理代行機關 등의 지정·指定取消 등에 대한 經過措置) 第15條 第5項·第30條 第5項·第31條 第5項·第36條 第3項·第38條 第6項·第42條 第6項 및 第49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代行機關 등의 지정·許可要件 등은 이를 大統領令으로 정하여 施行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제출기한에 관한 經過措置) 第48條 第1項·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提出期限은 이를 勞動部令으로 정하여 施行하기 전까지는 종전

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有害·危險設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第49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危險設備을 보유하고 있는 事業場의 事業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내에 각 有害·危險設備에 관한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방심하면 산업재해

조심하면 안전작업

일손마다 안전수칙

일터마다 안전관리